

그럼 보았다.

특히, 재산세는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고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가격과 주택공시가격을 물건별로 매년 공시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를 기반으로 전국 세대별합산 과세 체계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일할재산하는 제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따라 소유시점과 그 가격결정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제도임)의 과세체계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학문적적 즐민에서 현행 제도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된다.